[(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 법인의 이익 합계액)×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]-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 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